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6. 7. 1.>

시·도별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 부분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 제외)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시·도별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 부분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 제외) 정원표(제2조 관련)																
	합계	서울 특별시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부산 광역시	대구 광역시	인천 광역시	대전 광역시	울산 광역시	세종 특별 자치시	경기도	강원 특별 자치도	충청 북도	충청 남도	전북 특별 자치도	경상 북도	경상 남도	제주 특별 자치도
총계	6,673	7,552	6,168	3,781	3,043	3,428	1,642	1,429	609	11,559	4,466	2,898	4,289	3,534	5,558	5,576	1,241
소방 준감 이하	6,673	7,552	6,168	3,781	3,043	3,428	1,642	1,429	609	11,559	4,466	2,898	4,289	3,534	5,558	5,576	1,241

비고: 법률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59조제4호 및 제61조제3항을 시범 실시 중인 경상남도 창원시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소방준감 이하 1,117명)은 위 정원표에 따른 경상남도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포함한다.